

배포일시	2016. 12. 20. (화) 08:00	보도시점	2016. 12. 21(수) 조간부터 [온라인 매체 12.20.(화) 12:00부터]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장 홍종완 서기관 길영선 주무관 김부생	연 락 처	044-205-4210 044-205-4219 044-205-4221
쪽수/붙임	2쪽 / 있음	대변인실	044-205-1223

음주운전 방조도 범죄입니다!!!

— 국민안전처, 2016년 음주운전 예방캠페인 추진 —

- ▶ 주관 : 국민안전처, 경찰청, 서울시, 손해보험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 ▶ 일시/장소 : 2016. 12. 21. (수) 17:00 ~ 19:00 / 서울 신촌역 연세로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연말연시에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과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12월 21일 서울 신촌역 연세로에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연시에는 각종 송년 모임으로 인해 술자리가 잦아지고 있어, 음주운전의 유혹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시기로서 국민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 이번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에는 경찰청, 서울시, 손해보험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다양한 기관·협회가 함께 참여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된다.
- 최근 5년간('11~'15) 연평균 교통사고 사상자(340,513명)의 14.1% (48,059명)가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32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음주운전 사고는 10월~12월달에 월평균 9%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요일별로는 토요일(18%), 일요일(16%) 등 주말에 34%가 발생하였으며, 시간대별로는 밤 10시~새벽 2시(36%)사이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뺑소니사고(53,081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는 전체의 29.7% (15,741건)를 차지하는 등 뺑소니사고 3건 중 1건은 음주운전으로 나타났으며,

○ 이처럼 애꿎은 사람의 목숨까지 잃게 하는 음주운전. “설마 걸리기야 하겠어” 라는 생각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진다.

□ 이번 캠페인 행사에서는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음주운전 사고 사진 전시, 음주운전사고 예방홍보 영상물을 상영하고,

○ 음주운전 체험차량 시승, 음주고글 및 음주진단 체험 등을 통해 다양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 특히,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이를 알고도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사람까지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음주운전 방조범 입건 대상 대표 유형(예시) ◆

- ①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 ②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자
- ③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 국민안전처 최규봉 생활안전정책관은 “음주운전은 한 건만 발생해도 자신과 가족은 물론 사고를 당한 상대방에 대하여도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가져온다”라고 강조하면서,

○ “국민 모두가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도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김부생 주무관(☎ 044-205-42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행사 개요

□ 국민안전처 주관

- (추진목적) 연말연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주변에서 교통안전문화 확산과 음주운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음주운전예방 캠페인 추진
- (일시/장소) '16. 12. 21 (수) 17:00~19:00 / 서울 신촌역 연세로
- (주최·주관) 국민안전처 / 경찰청, 서울시, 손해보험협회, 안전실천시민연합,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약 150여명
- (주요내용)

- ① 시민참여 행사 : 음주 체험차량 시승, 음주진단 체험, 음주고글 체험 이벤트 등
- ② 사진 전시 및 영상물 상영 : 음주운전사고 사진 전시, 음주운전예방 홍보 영상물 상영 등
- ③ 홍보물 배부 : 거리 캠페인, 물티슈 배포, 인근 업소 캠페인 실시 등

□ 지방자치단체 주관

- (추진목적) 안전점검, 교통문화 확산행사 등 자체행사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음주운전예방 캠페인 추진
- (일시/장소) '16. 12. 19 ~ 12. 31 (2주간) / 지역실정에 맞게 선정
- (추진방식) 지자체에서 경찰청,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실시
- (주요내용)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세부계획 수립 추진

- ① 지자체 안전점검, 연말연시 안전대책 등과 연계하여 캠페인 추진
- ②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교육·홍보시 음주운전예방 홍보, 시너지 효과

II

주요 행사내용

□ 시민참여 행사 (홍보 부스 2동 설치)

- 음주운전 체험차량 시승, 음주진단 체험, 음주고글 체험

*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기념품(물티슈, 핫팩 등) 제공



□ 음주운전사고 사진 전시 및 영상물 상영 (야외 전시)

- 음주운전사고 사진(20여점,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 음주운전사고예방 홍보영상물* 등 상영(LED 전광판 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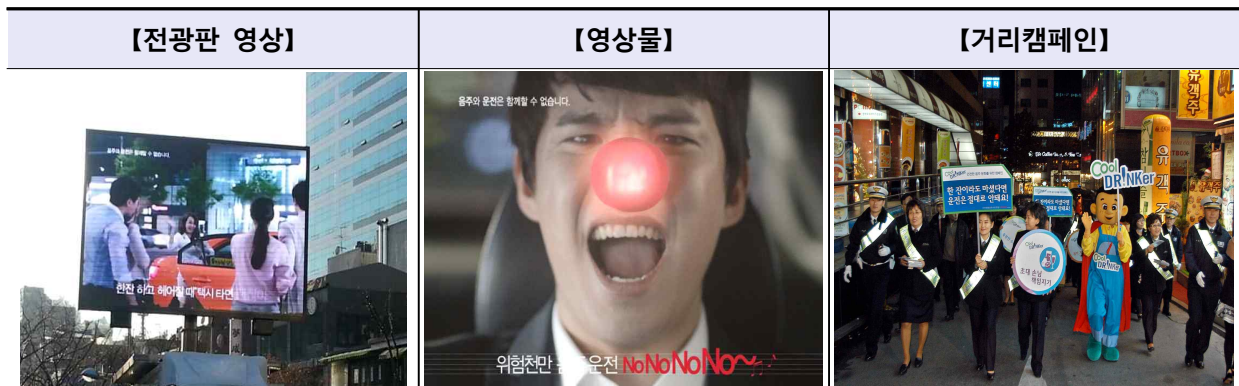
* 지키는 게 진짜 멋져(Don't drink & drive,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예방 리바영상물(교통안전공단)

□ 거리 캠페인 등 홍보물 배포

-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피켓 활용)

* 2개조로 구분 / 1개조는 행사장 체험부스 운영, 다른 1개조는 거리 캠페인

- 홍보문구가 적힌 물티슈(1,000개)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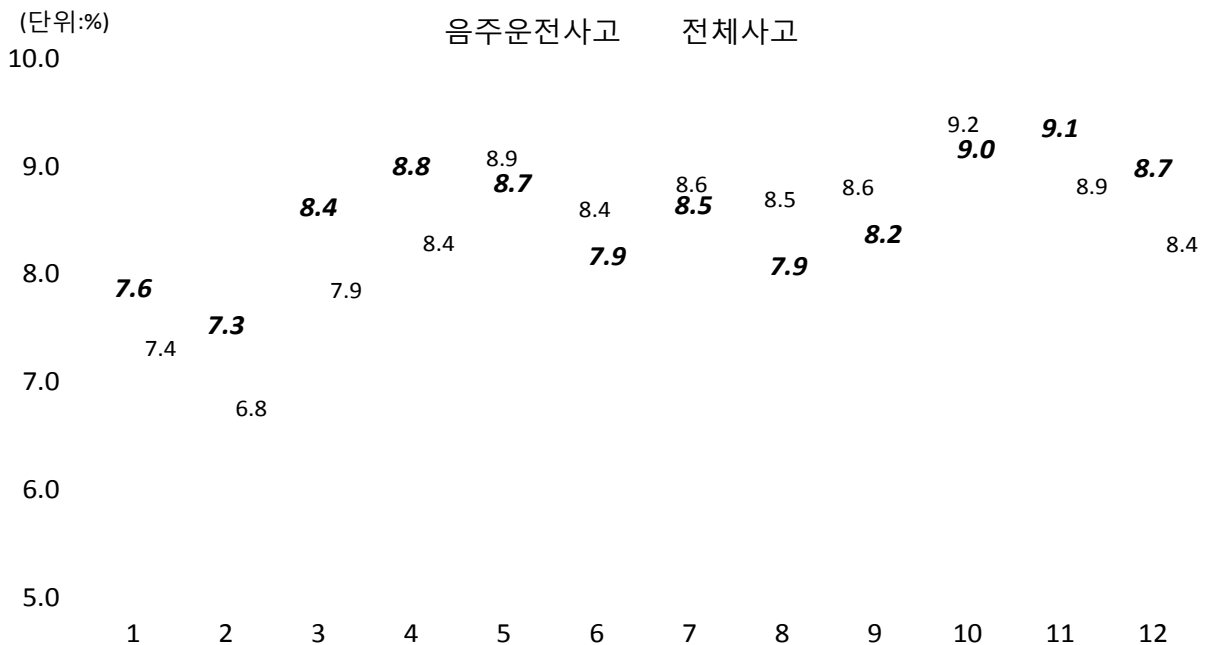
□ 음주운전사고 발생현황('11~'15년)

구분 연도	전체교통사고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 (건)	사망자수 (명)	부상자수 (명)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명)
				(건)	점유율	(명)	점유율	치사율	
2011	221,711	5,229	341,391	28,461	12.8	733	14.0	2.6	51,135
2012	223,656	5,392	344,565	29,093	13.0	815	15.1	2.8	52,345
2013	215,354	5,092	328,711	26,589	12.3	727	14.3	2.7	47,711
2014	223,552	4,762	337,497	24,043	10.8	592	12.4	2.5	42,772
2015	232,035	4,621	350,400	24,399	10.5	583	12.6	2.5	42,880
계	1,116,308	25,096	1,702,564	132,585	11.9	3,450	13.7	2.6	236,8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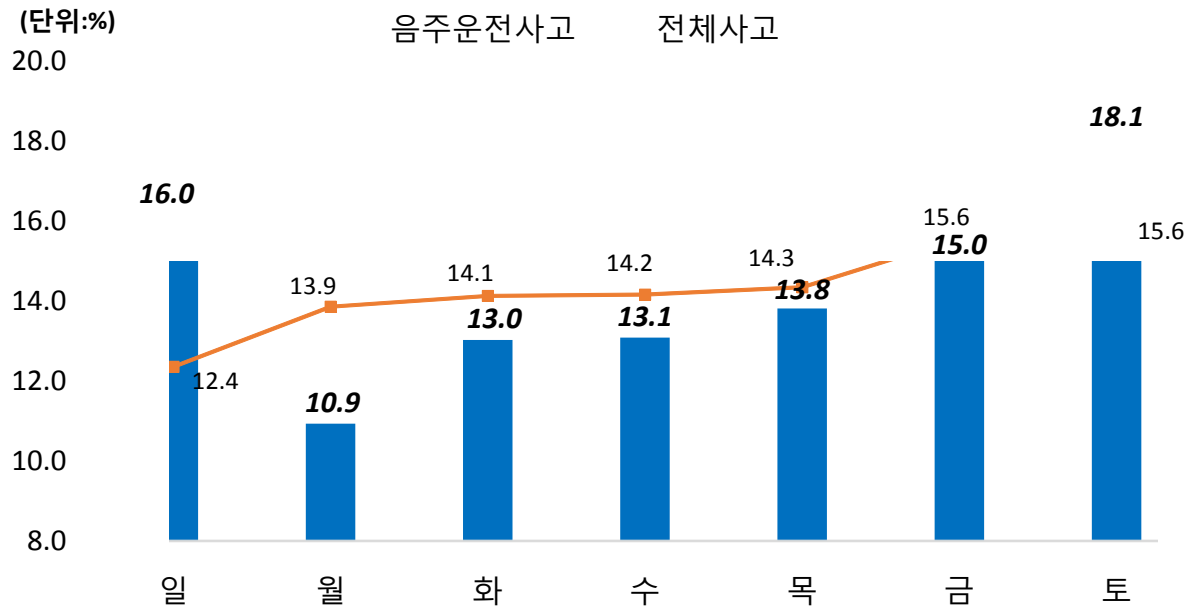
*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수('11~'15) : 1,702,564명 / 연간 평균 340,513명

* 음주운전 사상자수('11~'15) : 240,293명 / 연간 평균 48,059명 (1일 평균 13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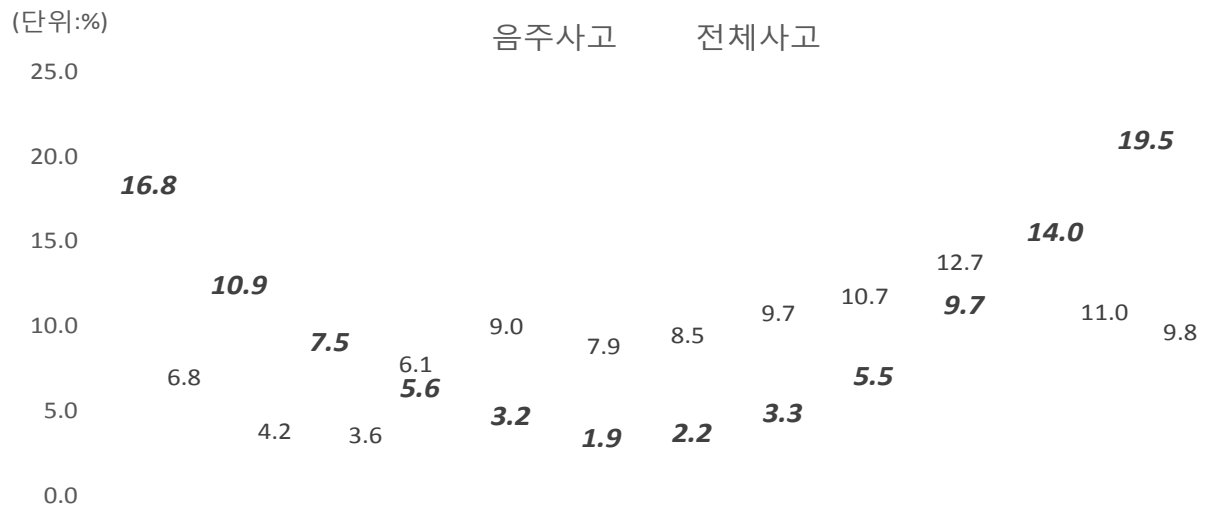
□ 월별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 점유율('11~'15년)



□ 요일별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 점유율('11~'15년)



□ 시간대별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 점유율('11~'15년)



음주운전 단속 강화

-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걸린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특정 장소·시간대를 불문하고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 전개

- ① 출근 시간 및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 지속 실시
- ② 유흥가·식당 및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연계되는 '목 지점' 이면도로(편도 2차로 이하)를 중심으로 불시 단속 전개
- ② 고속도로에서도 톨게이트·휴게소에서 화물차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실시 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

- '음주운전단속 공유 앱' 등을 통한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을 확대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에 대하여는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적극 적용

◆ 음주운전 방조범 입건 대상 유형(예시) ◆

- ①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 ②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자
- ③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 ④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

※ 다만, 대리운전이 손쉬운 지역에서 식당 업주가 술 판매 사례는 제외

- 이를 위하여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 부터 음주동석자, 목격자, 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방조혐의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하여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조장한 사람을 엄벌